

해링턴 플레이스 테크노폴리스 불법행위재공급 입주자모집공고




※ 단지 주요 정보

(분양문의 : 043-277-2602, 02-707-4582)

주택유형	규제지역여부	거주요건	재당첨제한
민영주택	비규제지역	청주시 거주자	10년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택지유형
최초 당첨자발표일('23.05.12.)로부터 1년 (현재 전매제한기간 도과)	없음	적용	공공택지

구분	입주자모집공고일	청약접수일		당첨자발표일	서류접수	계약체결
		특별공급	일반공급			
일정	26년 1월 9일 (금)	26년 1월 14일(수)	26년 1월 15일(목)	26년 1월 20일(화)	26년 1월 21일(수) ~ 1월 22일(목)	26년 1월 23일(금)

1 공통 유의사항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5.10.3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2024.10.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4.10.01.부터 사전당첨자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당첨자 및 그 세대원이 다른 주택(APT, 불법행위재공급, 규제지역 무순위)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사전당첨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여 사전청약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본 입주자 모집공고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의3에 따라 불법전매나 공급질서 교란 등으로 계약 취소된 주택(이하 “불법행위재공급 주택”이라 함)을 사업주체가 취득하여 재공급하기 위한 공고입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특별공급은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충청북도 청주시) 중 각 특별공급 유형별 자격요건을 갖춘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일반공급은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충청북도 청주시) 중 무주택세대주(무주택세대의 세대주)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합니다.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회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 (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 가. 주택공급 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무주택세대주”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를 말함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 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임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본 임주자모집공고에 청약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불법행위재공급 청약신청이 불가합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으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으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국내거주로 불인정되어 청약신청 불가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본 임주자모집공고와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APT, 불법행위재공급, 규제지역 무순위)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청약홈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은 진행하는 경우 포함),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각 1건씩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간 또는 일반공급간 중복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

■ 본 임주자모집공고는 청약홈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약으로만 신청이 가능(현장접수 불가)하며,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방식만 가능합니다. 반드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유형	공동 인증서	금융 인증서	네이버 인증서	KB국민 인증서	토스 인증서	신한 인증서	카카오 인증서
APT잔여세대 (무순위 / 임의공급 / 불법행위재공급)	○				X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분(공급질서교란자 또는 전매제한 위반자) 및 제58조제3항에 따른 입주자선정 제한기간 중에 있는 분 (부적격 당첨자)은 본 임주자모집공고에 청약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불가, 일정기간 입주자 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임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시 계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자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 접수가 제한됩니다.

■ 특별공급 유형별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동일 주택형 내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이후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단, 금회 일반공급 배정세대수가 없는 주택형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지 않음).

- 주택형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세대수의 500%를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은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
 -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harrington-technopolis.com)에 공개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될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 명단 발표시 함께 발표됩니다.
 - 특별공급 잔여물량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일반공급 잔여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 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은 작성 당시 법령 및 정책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이후 정책변경 및 법 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사업주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2

단지 유의사항

- 청약 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할 사항
 - 「해링턴 플레이스 테크노폴리스」 아파트는 **건본주택 운영을 종료하여 관람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청약 전 반드시 인터넷 홈페이지(www.harrington-technopolis.com)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현장 및 주변 여건 등을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계약 당시 선택되었던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옵션에 따라 시공이 진행중이거나 완료된 아파트**입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할 수 없으며, **최초 계약된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옵션) 을 모두 수락하는 조건으로만 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하오니, 이점 청약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급계약 체결 후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의 추가, 변경 또는 취소는 불가능합니다.)
 - 본 아파트는 계약 체결 후 정해진 기간 내에 계약금, 중도금, 잔금 순으로 모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본 불법행위재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6.01.09.(금)**이며(청약자격 요건 중 나이, 거주요건 등의 판단기준일), 주택관리번호는 **2025930060**입니다.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3.04.21.(금)이며 최초 주택관리번호는 2023000141이므로, 본 불법행위재공급 입주자모집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주택공급가격 및 단지여건, 유의사항 등의 세부 내용은 반드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불법행위재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주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외국인 제외)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분	특별공급 [신혼부부, 생애최초]	일반공급	당첨자발표	서류 접수 (서류심사 및 부적격확인)	계약체결
일정	26년 1월 14일(수)	26년 1월 15일(목)	26년 1월 20일(화)	26년 1월 21일(수) ~ 1월 22일(목)	26년 1월 23일(금)
방법	• (PC·모바일) 청약홈접수 (09:00 ~ 17:30) / 현장접수 불가		• (PC·모바일) 청약홈	• 효성해링턴플레이스 테크노폴리스 계약관리사무실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송절동 611 4층)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수도권 외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으로 기존 주택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하나, 본 아파트에 청약 당첨이 되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라 10년간 재당첨이 제한됩니다. 다만, 재당첨 제한기간 중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민영주택에는 본 아파트의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청약이 가능합니다.

당첨된 주택의 구분	적용기간(당첨자 발표일로부터)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제1항 제3호)	10년

- 본 주택의 전매제한은 최초 당첨자발표일(2023.05.12.)로부터 적용되며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전매제한기간	1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의 당첨자발표일(2023.05.12)로부터 전매제한기간이 기산되어, 현재 전매제한기간이 도과 되었습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

- 본 아파트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아파트에대한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본 사업 사업주체와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의 편의를 위하여 계약체결 시, 계약자는 사업주체에게 신고를 위임하고 부동산 거래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여야 하며, 만일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의 미제출 등 신고에 필요한 협조를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과태료 부과 등 일체의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계약 등 부동산거래와 관련된 제세공과금은 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하며, 아파트 공급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되며, 발코니 확장계약서 및 추가선택 품목 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도급문서’로서 인지세 납부대상으로 「인지세법」 제1조에 의거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연대하여 중부수입인지 형태로 균등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분식했을 경우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대상이므로 분양계약(전매 포함) 체결 시 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재금액은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동산거래계약서에 기재된 실거래가격(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는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최초분양계약자와 최종 매수자의 인지세 납부의무 이행 확인)와는 무관하게 중간 전매도 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부적격 청약, 공급질서 교란행위, 통장매매,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향후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할 수 없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3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청주시청 **공동주택과-773호(2026.01.07.)**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송절동 1195번지 (청주테크노폴리스 S2BL)

■ 공급규모 : 지하 2층, 지상 29~47층 5개동, 공동주택(아파트) 및 업무시설(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中 아파트 4개동, 총 602세대 中
불법행위재공급 주택 6세대 [특별공급 5세대(신혼부부 3세대, 생애최초 2세대), 일반공급 1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6년 08월 예정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및 면적

(단위 : ㎡, 세대)

주택 구분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주거전용 면적기준)	약식표기 (타입)	주택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 등)	계약면적	세대별 대지비분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 공급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신혼 부부	생애 최초	소계	
민영 주택	2025930060	01	084.7076	84A1	84.7076	32.8437	117.5513	57.4447	174.9960	29.7197	1	-	-	-	1
		02	084.9471A	84A	84.9471	32.8186	117.7657	57.6070	175.3727	29.8037	1	1	-	1	-
		03	084.9832B	84B	84.9832	33.9180	118.9012	57.6316	176.5328	29.8164	2	-	2	2	-
		04	084.6047C	84C	84.6047	34.8052	119.4099	57.3749	176.7848	29.6836	2	2	-	2	-
	합 계										6	3	2	5	1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세대, 원)

타입	라인	층구분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 (계약시)	중도금 (2026.02.24.)	잔 금 (입주지정일)
				대지비	건축비	분양가	추가부대경비	계			
84A1	204동 2호	42층	1	158,352,260	279,447,740	437,800,000	2,000,000	439,800,000	43,780,000	262,680,000	133,340,000
84A	202동 4호	34층	1	157,918,220	278,681,780	436,600,000	2,000,000	438,600,000	43,660,000	261,960,000	132,980,000
84B	203동 3호	13층	1	149,020,400	262,979,600	412,000,000	2,000,000	414,000,000	41,200,000	247,200,000	125,600,000
		21층	1	151,986,340	268,213,660	420,200,000	2,000,000	422,200,000	42,020,000	252,120,000	128,060,000
84C	204동 1호	10층	1	135,420,480	238,979,520	374,400,000	2,000,000	376,400,000	37,440,000	224,640,000	114,320,000
	202동 1호	37층	1	141,424,700	249,575,300	391,000,000	2,000,000	393,000,000	39,100,000	234,600,000	119,300,000

※ 상기 공급금액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2023.4.21.)의 분양가와 사업주체가 해당주택을 취득 및 재공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비(이자비용, 재판매비용)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불법행위 재공급으로 공급됨에 따라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하실 수 없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세대별 인지대, 소유권이전등기비용 및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있지 않습니다.

※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하여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잔금 납부와 관련하여 대출금용기관 알선을 진행하지 않으며, 계약자는 이를 인지하고 지정한 일자에 잔금을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공급금액(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납부기일 이후에 납부할 경우 미납(체납)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선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금액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약식표기(타입)	동호수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금액 및 일정		비고
			계약금(20%)	잔금(80%)	
			계약시	입주지정일	
84A1	204동 4202호	9,880,000	1,976,000	7,904,000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금액
84A	202동 3404호	9,780,000	1,956,000	7,824,000	
84B	203동 1303호	12,450,000	2,490,000	9,960,000	
	203동 2103호				
84C	204동 1001호	8,100,000	1,620,000	6,480,000	
	202동 3701호				

■ 추가선택품목 금액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약식표기(타입)	동	호수	추가선택품목금액	납부금액 및 일정		추가선택품목
				계약금(20%)	잔금(80%)	
				계약시	입주지정일	
84A1	204동	4202호	31,990,000	6,398,000	25,592,000	[시스템에어컨] 선택2 - 5대(거실, 주방, 침실1, 침실2, 침실3) [인테리어] 거실아트월 - 세라믹타일(거실) 주방마감재 - 세라믹타일(주방상판/벽) 조명 - 선택1 거실등+거실간접등+픽쳐레일등(거실/복도) [가구] 불박이장 - 침실2,3 매립형(2개소) 드레스룸 - 슬라이딩도어 보조주방 - 보조주방가구 [가전] 슈드레서(삼성전자 DJ30B9300WE) 쿡탑(쿡첸 CEN-SN3AONBA/인덕션2+하이라이트1) 오븐(LG전자 MZ385EBT1), 식기세척기(LG전자 DIB22S) 빌트인냉장고 선택3 - 김치냉장고+냉장고+냉동고 전동빨래건조대(파세코 PCD-100) 다기능복합건조기(그렉스 BD-150A / 2개소_공용욕실,부부욕실) 비대일체형 양변기 (대림 DB-9700 / 부부욕실)
84A	202동	3404호	23,140,000	4,628,000	18,512,000	[시스템에어컨] 선택2 - 5대(거실, 주방, 침실1, 침실2, 침실3) [인테리어] 바닥마감재 - 현관, 거실, 복도, 주방바닥 [가구] 불박이장 - 침실2,3 매립형(2개소) 드레스룸 - 선택2 화장대 [가전] 쿡탑(쿡첸 CEN-SN3AONBA/인덕션2+하이라이트1) 오븐(LG전자 MZ385EBT1), 식기세척기(LG전자 DIB22S) 식기세척기(LG전자 DIB22S) 빌트인냉장고 선택3 - 김치냉장고+냉장고+냉동고 전동빨래건조대(파세코 PCD-100)

84B	203동	1303호	26,620,000	5,324,000	21,296,000	[시스템에어컨] 선택2 - 5대(거실, 주방, 침실1, 침실2, 침실3) [인테리어] 바닥마감재 - 현관, 거실, 복도, 주방바닥 벽마감재 - 벽면시트판넬+히든도어(거실, 복도) 거실아트월 - 세라믹타일(거실) 주방마감재 - 세라믹타일(주방상판/벽) [가구] 불박이장 - 침실2,3 매립형(2개소) [가전] 쿡탑(쿠첸 CEN-SN3AONBA/인덕션2+하이라이트1) 전동빨래건조대(파세코 PCD-100) 다기능복합건조기(그렉스 BD-150A / 2개소_공용욕실,부부욕실)
84B	203동	2103호	13,710,000	2,742,000	10,968,000	[시스템에어컨] 선택2 - 5대(거실, 주방, 침실1, 침실2, 침실3) [가구] 불박이장 - 침실2,3 매립형(2개소) 드레스룸 - 선택3 슬라이딩도어+화장대 보조주방 - 보조주방가구 [가전] 전동빨래건조대(파세코 PCD-100) 비대일체형 양변기 (대림 DB-9700 / 부부욕실)
84C	204동	1001호	30,750,000	6,150,000	24,600,000	[시스템에어컨] 선택2-6대(거실, 주방, 침실1, 침실2, 침실3, 알파룸) [인테리어] 현관중문 - 3연동 슬라이딩 도어(수동) 벽마감재 - 벽면시트판넬+히든도어(거실, 복도) 거실아트월 - 세라믹타일(거실) 주방마감재 - 세라믹타일(주방상판/벽) 조명 - 선택3 거실등+거실간접등+픽처레일등+식탁등+주방등+아일랜드등(거실/복도/주방) 불박이장 - 침실2,3 매립형(2개소) [가전] 쿡탑(쿠첸 CEN-SN3AONBA/인덕션2+하이라이트1) 오븐(LG전자 MZ385EBT1) 빌트인냉장고 선택1-1 김치냉장고
84C	202동	3701호	20,350,000	4,070,000	16,280,000	[시스템에어컨] 선택2-6대(거실, 주방, 침실1, 침실2, 침실3, 알파룸) [인테리어] 바닥마감재 - 현관, 거실, 복도, 주방바닥 주방마감재 - 세라믹타일(주방상판/벽) [가구] 불박이장 - 침실2,3 매립형(2개소) [가전] 쿡탑(쿠첸 CEN-SN3AONBA/인덕션2+하이라이트1) 오븐(LG전자 MZ385EBT1)

- 상기 추가선택품목 금액에는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아파트 공급계약과는 별도의 계약사항입니다.
- 시스템에어컨 설치에 따라 각 세대내 실외기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한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질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은 시공 상의 이유로 에어컨 공사시점에 선정된 모델로 설치됩니다.
- 시스템에어컨 선택시, 기 선정된 시스템 에어컨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가 임의로 에어컨 및 실외기를 추가 설치하여 냉방기능 등에 장애가 발생하는 것에 관해서는 하자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내 제공되는 시스템에어컨 컨트롤러는 무선으로 제공되며, 추후 유선 컨트롤러 미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설치위치는 계약자가 임의로 지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공사비에는 취득세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지자체로부터 계약자에게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의3에 따라 불법전매나 공급질서 교란 등으로 계약취소된 주택을 사업주체가 취득하여 재공급하는 주택으로써, **최초 계약당시 선택되었던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옵션에 따라 사공이 진 행중인 관계로 위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옵션을 모두 수락하는 조건으로만 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하오니, 이 점 청약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의 추가, 변경 또는 취소는 불가합니다.)

※ 추가 선택품목의 세부 품목 및 공급금액은 최초입주자모집공고(2023.04.21)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공급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단위 : 세대)

구분	84A	84B	84C	합계
신혼부부 특별공급	1	-	2	3
생애최초 특별공급	-	2	-	2
계	1	2	2	5

특별공급 공통사항

[2025.03.3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55조의3(특별공급신청 요건 등에 관한 특례) 개정사항」

조항	특별공급 신청유형	내 용	유의사항
제1항 (배우자의 혼인 전 이력배제)	신혼부부 생애최초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혼인 전 처분완료한 경우에 한함)	- 적용횟수 제한 없음
제 2항 (혼인 특례)	신혼부부	청약신청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제한사항(재당첨제한, 특별공급 횟수 제한)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 혼인특례는 본인가준 1회에 한하여 적용 가능
제 3항 (출산 특례)	신혼부부	‘24.06.19. 이후 출생한자녀 (태아 또는 ’24.06.19. 이후 출생한 사람을 입양한 경우 포함)가 있는 경우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 첨된 이력이 있더라도 제 55조에 따른 특별공급 횟수 제한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 가능 → 이 경우 특별공급의 무주택 세구성원 또는 무주택 세대주 요건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 더라도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신청 가능 (*)기존주택 처분조건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함 1.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할 것 2.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전에 기존 소유주택의 소유권 처분에 관한 서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4항 각 호)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할 것 3. 공급받은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을 완료할 것 → 이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공공주택 제외) 추첨제 청약신청자의 부동산가액 산정 시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가액은 합산 하지 않음	- 출산특례는 세대기준 1회에 한하여 적용 가능 - 특별공급 횟수 제한 외 다른 청약 제한사 항은 배제할 수 없음 -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 에 당첨된 이력이 없는 경우 출산특례적 용 불가 -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 외의 세대원이 과 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거나 주 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출산특례 적용 불가

※ 혼인특례 또는 출산특례를 사용하여 청약하려는 분은 청약신청 시 특례 사용여부를 선택하여야 하며, 청약신청 시 선택한 특례 사용여부는 변경·취소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여 본 주택의 특별공급 입주자 및 추가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 없이 특별공급 당첨자 및 특례 사용자로 명단 관리하며 향후 혼인특례 사용자 본인은 혼인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고, 출산특례 사용자가 속한
세대는 출산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지 않아도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분이 착오에 의해 특례를 사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특례 사용 사실은 정정될 수 없으며, 특례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분이 특례를 사용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당첨이
취소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혼인특례와 출산특례를 동시에 사용하여 청약할 수 없습니다.

※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특별공급에 당첨된 분이 공급받을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까지 기존주택 처분 완료함을 증빙하지 못한 경우 공급계약이 취소되며, 입주가 불가합니다.

구분	내용		
공급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제5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다만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구 분		처리방법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당첨자발표일이 같은주택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 모두 부적격 처리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 될 수 있습니다.		
무주택 요건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무주택세대 구성원의 정의는 “1.공통유의사항”을 참조)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4-1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 3세대

구 분	내 용							
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청주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인 분 ■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당첨자 선정방법	■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 선정							
비 고	■ 자녀기준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확인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6.01.09.(금)		(해당 세대의) 전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전년도 소득		
	- 2024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구 분	비 율	소득금액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40%이하	~ 10,087,437원	~ 12,009,323원	~ 12,643,467원	~ 13,626,320원	~ 14,609,174원	~ 15,592,027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이하	~ 11,528,499원	~ 13,724,941원	~ 14,449,677원	~ 1,557,2938원	~ 16,696,198원	~ 17,819,459원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702,038) ×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 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 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구분	금액	내용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건축물	건축물의 종류 주 택 주 택 외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토지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4-2

생애최초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 2세대

구 분	내 용
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청주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 - 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함 ※ (예외)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혼인 전 처분한 이력은 배제합니다. ■ 아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분 - 가.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청약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가 있는 분 - 나. 1인 가구(혼인 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도 없는 분) * 1인 가구는 '단독세대'와 '단독세대가 아닌 분'으로 구분됨 * '단독세대'란, 단독세대주이거나, 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분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단독세대 신청자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신청가능함 (단, 본 주택은 60㎡ 이하 주택형이 없으므로 1인가구 중 단독세대인 자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신청 불가) * '단독세대가 아닌 분'이란, 직계존속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함 ■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분을 포함 **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당첨자
선정방법

■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 선정

비 고

■ 자녀기준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확인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6.01.09.(금)	(해당 세대의) 전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전년도 소득

- 2024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비율	소득금액					
	3인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160%이하	~ 11,528,499원	~ 13,724,941원	~ 14,449,677원	~ 1,557,2938원	~ 16,696,198원	~ 17,819,459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702,038) ×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 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구분	금액	내용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건축물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토지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5 일반공급

구 분	내 용
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청주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당첨자 선정방법	■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 선정

6 청약신청 및 당첨자 발표 안내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신청방법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PC: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
- 경로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불법행위재공급 → 주택명 및 주택형 등 선택 → 청약자격 등 입력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 09:00~17:30
-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또는 토스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청약도움e’) 서비스	· 청약신청 단계에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행정정보를 수신하여 세대주 여부 및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 청약신청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서비스 이용은 선택사항이며,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및 연계 기관(정보 보유기관)의 상황 등에 따라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용방법 : 청약신청 → APT → 청약홈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팝업 →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당첨자발표 서비스	청약홈	·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 · 조회기간 : 2026.01.20.(화) ~ 2026.01.29(목) (10일간) · 조회기간(10일)이 경과하더라도 ①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또는 ②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문 자	· 제공일시 : 2026.01.20.(화)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공대상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 * 당첨자 발표 안내 문자에는 스미싱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링크(URL)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링크 (URL) 또는 전화 번호는 절대 누르지 않는 등 유사한 스미싱 문자에 대해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확인 구비서류

■ 당첨자(예비입주자) 신청자격별 구비서류 안내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신청자격별 구비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해당자)			
공통서류 일반 및 특별공급 포함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재외동포 : 국내거소사실신고증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 용도 : 주택공급 신청(계약용(인감증명서 본인발급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 발급용에 한해 가능하며 대리발급용은 불가함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 및 대리계약은 불가
	○		주민등록표등본(전체)	본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뒷자리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본인	■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주소변동 사항, 변동사유 및 발생일 (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 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등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원	본인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1961년 이전 출생자는 1961.1.1.부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를 포함하여 발급
		○	복무확인서	본인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자격으로 신청하는 경우(10년 이상 군복무기간 명시)
		○	해외체류(단신부임)관련 증빙서류	본인 및 세대원	■ 당첨자(청약신청자) 본인만(혼자)생업에 종사하기 위해 국외에 현재 체류 중이거나, 체류한 경우로서 해당 해외 체류 기간을 국내 체류 기간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아래표 ‘해외근무자(단신부임) 입증(증빙)서류’ 참조]
		○	주민등록표등본(전체)	배우자	■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뒷자리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등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신혼부부로서 혼인신고일 확인 시 필요하며, 동일 배우자와의 혼인합산기간을 파악하기 위해 ‘상세내역’을 포함하여 발급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19세이상 세대원	■ 주택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포함) 전원 제출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발급처: 국민건강보험공단/FAX 수신 문서 가능)
		○	소득증빙서류	배우자	■ 주택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포함) 전원 제출 ■ 아래 소득증빙서류 참고 ※ FAX 수신문서 등 복사본 불가, 직인이 날인된 원본 서류 필수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피부양 직계존속	■ 당첨자의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 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 사항(1년이상),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재혼가정의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임신잔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한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서류에 한함(담당 의사명, 출산예정일, 의료기관 등록번호 및 연락처 및 직인 날인 원본)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부동산 소유현황	본인 및 세대원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소유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 ※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 체크
신혼부부 특별공급		○	기존주택 처분 관련 서약서	본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2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서약서(별지 제6호서식)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해당자)			
생애최초 특별공급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19세이상 세대원	- 주택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포함) 전원 제출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발급처: 국민건강보험공단/FAX 수신 문서 가능)
	○		소득증빙서류		- 주택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포함) 전원 제출 - 아래 소득증빙서류 참고 ※ FAX 수신문서 등 복사본 불가, 직인이 날인된 원본 서류 필수
	○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본인	주택공급신청자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57년도 서류(아래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참고)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미혼자녀가 주민등록표등본상 확인되지 않는 경우, “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혼인여부에 관한 사항이 가족관계증명서상 확인되지 않는 경우, “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피부양 직계존속	당첨자의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 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 사항(1년이상),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	임산조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한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서류에 한함(담당 의사명, 출산예정일, 의료기관 등록번호 및 연락처 및 직인 날 인 원본)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부동산 소유현황	본인 및 세대원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소유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 ※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 체크
부적격 통보 받은자		○	주택 및 분양권등 소유여부 증명서류	해당 주택	- 일반 주택 :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 무허가 주택 : 관할 지자체에서 발급한 무허가 건물임을 확인하는 공문 - 폐가, 멸실 주택 : 건축물철거결실신고서 - 당첨자 및 세대원의 소유주택현황 사례가 다양하여 사업주체가 추가로 증빙을 요구하는 서류 및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당첨사실 소명 서류	해당자	해당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제3자 대리신청시 추가사항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당첨자(계약자)	당첨자(계약자)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또는 아파트계약 위임용)
	○		위임장	당첨자(계약자)	당첨자(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접수(계약)장소에 비치
	○		신분증	대리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내거소신고증(재외동포), 외국인등록증(외국인)

※ 상기 제 증명서류는 금회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 가능합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주 등록 또는 변경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구성일 및 사유, 발생일 등 모두 포함하여 발급하시기 바랍니다.(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득실확인서, 소득증빙서류 등 모든 제반서류 상 등재된 모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반드시 표기되어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 해외근무자(단신부임) 입증(증빙)서류 ※ ‘단신부임’ 청약신청 및 당첨자는 상기 공통서류 외 추가제출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해당자)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		해외체류 증빙서류	본인	-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재직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 경우 반드시 제출 :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불가능한 자 또한 인정 안됨 ※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공증 첨부 필수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상세)	배우자 및 세대원전원	- 배우자 및 세대원이 생업 등으로 해외 체류 여부 확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출입국 기록 출력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기록대조일 : “본인 생년월일부터-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설정하여 발급
		○	비자발급내역 및 재학증명서 등	배우자 및 세대원전원	-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국가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비자발급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하여야 하며 세대원이 당첨자(공급신청자)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국외 체류기간 연속 90일)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불가
		○	주민등록초본(상세)	직계존속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청약신청자의 미성년 자녀의 경우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지 않더라도 해외근무자 우선공급 예외규정 적용을 위한 세대원의 범위에 포함 됩니다.)

※ 청약신청자가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만 상기 예외규정 적용이 가능하며, 단독세대원으로 되어 있거나, 동거인의 세대원으로 등재된 경우에는 적용 불가합니다.

※ 청약신청자가 해외에 체류 중인 기간 내 세대원 및 미성년자녀 중 한명이라도 신청자와 동일국가 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한 경우 단신부임 불인정합니다. (해당 국가 출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재입국한 경우 해당 국가에 계속 체류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 청약신청자 및 신청자의 배우자가 모두 해외에 체류하고 있다면 신청자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어, 해외체류 예외규정 적용 불가합니다.

■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원본)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매월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 연말정산 등으로 인해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기 전에 특별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	① 해당 직장 ② 해당 직장/세무서
	금년도 신규취업자 또는 금년도 전직(이직)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② 금년도 월별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직인날인)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직인날인) ③ 직장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전년도 동일직장, 동일직급, 동일호봉인 자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거나, 해당 직장의 연봉/근로계약서(직인날인)를 제출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	①③ 해당 직장 ② 해당 직장/세무서 ④ 국민연금관리공단
	전년도 신규취업자 또는 전년도 전직(이직)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 ‘근무처별 소득명세’표상 ‘주(현) 총급여 금액을 ‘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자격취득 일자로 나누어 월평균 소득산정	① 해당 직장 ② 해당 직장/세무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 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①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서(근로소득지급조서(명세서))(직인날인)	① 해당 직장

자 영 업 자	일반과세자(사업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③ 소득금액증명 발급 불가 시 - 국민연금 가입자 :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모집공고일 이전 가입한 경우만 인정) - 국민연금 미가입자 : 모집공고일 이전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모집공고일 이전 신고분만 인정) (신고서상 금액(매출액-매입액) 및 사업기간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	①, ② 세무서 ③ 국민연금관리공단 / 세무서
	법인사업자	①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원본(직인날인) ② 전년도 재무제표 원본(직인날인)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⑤ 재직증명서 ※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서, 재직증명서에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	①, ②, ⑤ 해당직장 ③ 세무서 ④ 등기소
	신규사업자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국민연금 가입자 :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모집공고일 이전 가입한 경우만 인정) ③ 국민연금 미가입자 : 모집공고일 이전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모집공고일 이전 신고분만 인정) ④ 신규 사업자로써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 이전인 경우 : 모집공고일 이전 최근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모집공고일 이전 신고분만 인정) (신고서상 금액(매출액-매입액) 및 사업기간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	① 세무서 또는 등기소 ② 국민연금관리공단 ③, ④ 세무서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①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또는 간이지급명세서 ②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원본, 직인날인)	① 해당 직장/세무서 ② 해당 직장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공급신청자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이면 해당 세대 전체가 기준소득 이하인 것으로 간주)	① 주민센터
비정규직, 일용근로소득자		①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② 상기 서류가 없는 경우 국민연금부형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 프리랜서이거나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및 위촉(해촉)증명서	① 해당직장/세무서 ② 국민연금관리공단
무직자 (만19세이상)		① 비사업자 확인각서(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 등이 아닌 경우) ② 소득없음(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제출	① 서류접수처 비치 ② 세무서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소득산정의 대상시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전전년도 소득자료가 발급되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은 전전년도 기준으로 소득을 증빙해야 함)

※ 상기 소득입증 관련 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전년도 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 재직증명서상 휴직 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을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근로 계약서상의 계약금액으로 소득을 통해 월평균소득을 산정 위촉증명서, 해촉증명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월별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서류제출로 소득기간을 산정하며 사업주체는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소득산정은 주택공급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을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준비한 후 청약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납부 입증 제출서류

해당 여부	서류 구분	확인자격	증빙 제출서류	발급처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입증서류	근로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또는 소득금액증명	- 해당 직장 - 세무서
		자영업자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소득금액증명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①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납부내역증명, 납세증명서 포함) -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합니다. ※ 결정세액이 0 또는 (-)인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포함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분으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자)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아래의 서류로서 모집공고일 이전(모집공고일이 포함된 당해연도도 인정함)의 5개년도 서류 ① 소득금액증명 및 납부내역증명서(종합소득세 납부자) ※ 결정세액이 환급 또는 0원인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납부계산서 추가 제출 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③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직인날인)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 ④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중 결정세액이 환급 및 없는 경우)	■ 해당 직장 ■ 세무서
---------------	---	--	------------------

※ 해당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세액공제·세액감면 등으로 납부 의무액이 없는 경우도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중 결정세액이 환급 또는 없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제출(해당년도 모두)하여야 합니다.

※ 소득관련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분에 한하며,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시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대상자의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청약자격 관련 기타 예외사항

- 군복무(직업군인 제외) 중이어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 없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의 소득을 근무월수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합니다.
- 청약자의 자녀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자녀가 청약자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청약자격을 인정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합니다.
-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합니다.

■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입증 서류 (소득기준 초과 신청자에 한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 및 세대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 전원의 자산 입증서류

해당자격	자산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부동산 소유 현황'이 있는 경우	소유증빙 (필수)	① 부동산 소유 현황 (세대원별 각각 발급) -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② 건물(토지)등기부등본 (*부동산 소유 현황에 표시된 해당 부동산 모두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발급) ③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해당 부동산의 재산세 납부내역을 입증하는 서류)	①, ②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③ 해당 행정복지센터 및 정부24
	자산가액증빙 (추가)	① 공동(개별)주택가격 확인서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인 경우) ②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소유 부동산이 토지이거나 단독·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인 경우) ③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 외 건축물인 경우) * 서울시 : '서울시ETAX > ETAX이용안내 > 조회/발급 > 주택외건물시가표준액조회'에서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 서울시 외 : '위택스 > 지방세정보 > 시가표준액 조회'에서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①, ② 해당 행정복지센터 ③ 서울시이택스(etax.seoul.go.kr), 위택스(www.wetax.go.kr)
	해당자	「농지법」 및 「초지법」 등에 따라 토지가액에서 제외되는 경우 ① 농지대장 ② 축산업 허가증 ③ 토지이용계획확인서	① 해당 행정복지센터 ② 해당 축산과 ③ 토지이용(www.eum.go.kr)
'부동산 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	필수	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②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해당 부동산의 재산세 납부내역을 입증하는 서류)	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② 해당 행정복지센터

•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 자산기준 충족을 입증해야 하는 주택공급신청자는 상기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상기 자산입증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 및 세대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 전원의 자산입증서류를 포함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검색대상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주택처분 기준일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 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해당 목에서 정하는 주거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 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가.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나목3)에 해당하지 않는 것: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 른 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 하일 것 나. 다음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일 것 1) 「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2)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3)에 해당하지 않는 것 3)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table><tr><th>조항</th><th>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th><th>주거전용면적</th><th>수도권</th><th>비수도권</th></tr><tr><td>제53조제9호가목</td><td>아파트(도시형생활주택제외)</td><td>60㎡ 이하</td><td>1억 6천만원</td><td>1억원</td></tr><tr><td rowspan="3">제53조제9호나목</td><td>단독주택</td><td rowspan="3">85㎡ 이하</td><td rowspan="3">5억원</td><td rowspan="3">3억원</td></tr><tr><td>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td></tr><tr><td>도시형 생활주택</td></tr></table>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함)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2.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 · 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일 것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일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조항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	주거전용면적	수도권	비수도권	제53조제9호가목	아파트(도시형생활주택제외)	60㎡ 이하	1억 6천만원	1억원	제53조제9호나목	단독주택	85㎡ 이하	5억원	3억원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조항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	주거전용면적	수도권	비수도권														
제53조제9호가목	아파트(도시형생활주택제외)	60㎡ 이하	1억 6천만원	1억원														
제53조제9호나목	단독주택	85㎡ 이하	5억원	3억원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8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계약체결

■ 계약체결 일정 및 장소

구 분	계약일정	계약장소
당첨자 계약 체결	2026.01.23.(금) 10:00 ~ 14: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송절동 611 4층

-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금액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계좌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구비서류를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청약제한사항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와 공급자격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자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됩니다.
-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은 지정계좌로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여야 합니다. (현금 및 수표 수납 불가)
-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무통장 입금 시 예시 : 101동 1001호 계약자 → 1011001홍길동)
- ※ 무통장 입금증은 계약체결 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 착오납부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무통장 입금자 중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당사가 규정한 일정 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계약체결 시 구비사항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 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본인 계약 시		○	당첨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검증 서류 일체	본인	• 입주대상자 자격검증 서류 제출 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적격 여부 확인 증빙 서류	본인	• 기타 사업주체가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
	○		계약금 입금 확인 서류	본인	• 무통장 입금 영수증 또는 입금 확인증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 인감증명서는 아파트 계약용으로 본인 발급용에 한함. ※ 입주대상자 자격검증 서류 제출 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대리 계약 시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
	○		위임장	본인	• 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접수 장소에 비치
	○		신분증, 인장	대리인	• 대리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 및 상세 발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하며,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여부, 세대원관계 확인, 기간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상세'로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 인감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외국국적동포 또는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안내

- 계약금과 지정된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아래의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납부계좌는 분양대금, 발코니 공사비확장 공사비 대금,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납부계좌가 모두 상이하오니 입금시 각 계좌 번호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치 않으며,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구 분		금융기관	예금주	계좌번호	비고
분양대금	계약금	신한은행	신한자산신탁(주)	100-035-543358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예 : '201동 301호 당첨자 홍길동' → 2010301 홍길동]
	중도금, 잔금			세대별 가상계좌 부여	모계좌 (신한은행, 100-035-543358, 예금주 : 신한자산신탁(주))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계좌 (계약금 / 잔금)		신한은행	신한자산신탁(주)	100-036-221731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예 : '201동 301호 당첨자 홍길동' → 2010301 홍길동]
추가 선택품목 옵션 (계약금 / 잔금)		신한은행	신한자산신탁(주)	100-035-543529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예 : '201동 301호 당첨자 홍길동' → 2010301 홍길동]

- 상기 공급금액 납부계좌로 입금하여야 유효하며, 공급금액 납부계좌로 입금하지 아니한 어떠한 다른 형태의 입금 및 납부도 이를 정당한 납부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무효로 처리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대금 중 중도금·잔금 계좌는 세대별로 가상계좌를 부여할 예정으로 상기 모계좌로 이체되어 관리되며, 세대별로 계좌번호가 상이 하므로 입금 시 유의 바랍니다.[개인별 납부계좌(가상계좌)는 계약체결 시 세대별 계약서에 명기하고 고지할 예정이며, 사업주체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당첨 동·호수의 공급대금 확인 후 입금하시기 바라며, 계좌 오류, 착오납입 등에 따른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타인 명의 등 계약금 납부 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 문제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계약자 중도금 대출안내

- 대출기관 : 농협 (내수농협 외)
- 적격대출 시 대출취급기관, 집단대출보증기관의 중도금대출협약조건에 의거 계약금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고 계약금 일부 미납 시에는 중도금 대출이 불가합니다.
- 적격대출시 중도금 대출이자자와 관련하여서는 중도금 이자후불제를 적용하며, 금융기관과의 약정조건에 따라 중도금 대출이자자는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직전 이자납부일까지는 사업주체가 계약자를 대신하여 납부하고, 이후 발생하는 대출이자자는 계약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자가 잔금 납부시 사업주체가 대신하여 납부한 중도금 이자후불제에 따른 대출이자자를 사업주체에게 지급하여야 입주가 가능하며, 입주지정기간 내 미납시에는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시행위탁자 및 시공사의 중도금 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대출취급기관 선정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청주시가 아닌 그 외 지역의 대출취급기관(본점 및 지점 등)이 선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거리에 위치할 수 있어 중도금 대출(권리의무승계 계약서상 양도인 및 양수인의 대출취급기관 방문 관련 등)과 관련하여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입주지정일이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경우에도 중도금 대출이자자는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시행위탁자가 우선 납부하며,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계약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적격대출시 중도금 대출약정기간은 중도금 대출 최초 실행일로부터 사업주체가 지정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이며, 대출이자자는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시행위탁자가 대신 납부하되 계약자는 입주시 사업주체에서 지정한 기일 내에 중도금 대출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합니다.(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입주가 거부될 수 있으며,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이자 등을 부담하여야 함)
- 아파트 공급계약이 계약자의 사정이나 귀책사유로 인해 해제가 될 경우 계약자는 위약금과 별도로 시행위탁자가 우선 납부한 중도금 대출이자 전액을 사업주체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의 알선은 시행위탁자 및 시공사의 의사사항이 아니며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 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제1·2금융권) 및 기타 대출 방식 포함) 및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계약자에 대한 편의 제공에 불과함)
-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시행위탁자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 은행과 중도금 대출 협약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라 하더라도 중도금 대출실행 이전에 본인의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대출이 불가능하게 된 계약자는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대출취급(보증) 수수료(집단대출 보증기관의 보증수수료 등), 인자대 등 제반 경비는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적격대출은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 은행 대출, 대출한도 및 건수 초과, 한국주택금융공사(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정부의 금융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별도로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됩니다.)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대출중단 요구에 따라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사유에 기인하므로 이에 대한 이익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대출 금융기관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아파트는 시행위탁자 및 시공사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도, 금융관련 정책, 대출기관의 여신 관리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규정 등으로 대출조건이 세대별, 각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최종적으로 중도금 대출 실행이 불가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중도금 대출 불가 및 대출한도 축소 등으로 인한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고 이와 관련된 책임을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부담하지 않습니다.(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 가능 여부 반드시 확인)
- 중도금 및 잔금의 지연이자자는 공급계약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 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시행위탁자가 대납하던 중도금 대출이자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시행위탁자 및 시공사가 알선하지 않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받은 경우 그에 대한 이자는 계약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적격대출 관련 중도금 대출 신청 안내는 사업주체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한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기일 내에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이전 및 근저당권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수수료 및 근저당설정 비용 등은 대출금융기관이 정한 부담 주체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시행위탁자 및 시공사가 알선한 대출의 대출 기간 만료 시(준공 후 미입주 등) 금융기관의 대출 기간 연장 및 공정률에 따른 납부일자의 변경에 대해 별도의 절차 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분양권전매 요청 시 당해 주택의 사업주체 및 대출취급기관은 양수인의 신용등급 등의 제반 조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대출취급기관 또는 사업주체의 판단에 따라 양수인이 신용등급 등의 제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분양권전매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대출 관련 세부내용은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관련 정책, 대출 상품의 종류 및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재외동포 및 외국인인 경우 대출 가능 여부 반드시 확인)
- 사업주체는 대출기관이 아니므로 사업주체 관계자는 대출 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중도금 대출 취급기관의 심사를 통하여 대출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고객의 대출비용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는 사업주체가 알선한 금융기관에서 중도금을 대출받았을 경우 준공 후 소유권 이전등기 및 대출은행의 1순위(제2금융권에서 추가대출을 받은 경우 제2금융기관의 2순위 포함) 근저당 설정 시까지 위 표시 부동산에 임대차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 본 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급계약서의 약관에 따릅니다.

■ 계약체결 시 유의사항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소명기간 내에 소명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순위 내 청약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 내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금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의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4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부적격 당첨자를 당첨자로 인정하는 경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4항
 - ① 같은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 ② 같은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주택소유여부 판단 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사실을 포함하며, 국토교통부에 무주택 여부 검색을 의뢰하여 부적격 당첨자를 판명합니다.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타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합니다. (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될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공급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체결된 계약은 취소됩니다.
-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통장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통장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 시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됩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 서류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이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조치 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및 기타 관계법령에 위반될 시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고,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처리되고 계약은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되며, 계약금을 제외한 이자 및 금융비용 등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계약체결 후 분양금액의 연체, 계약 부정행위 등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계약 시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함.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합니다.
-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 사항과 아파트 배치, 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주변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을 포함한다.)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의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일반공급으로 동일세대 내에서 세대원간 동일주택 중복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당첨자 모두 계약체결이 가능하며, 당첨되었으나 계약체결을 하지 않은 분의 청약통장은 계좌부활 되지 않습니다.
- 본 아파트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 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음.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처리 됩니다.
- 본 아파트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업주체와 계약자가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 하여야 하므로 부동산 거래신고에

다른 일정한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 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대상임으로 분양계약(전매 포함) 체결 시 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함. 기재금액은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동산거래계약서에 기재된 실거래가격(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는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최초분양계약자와 최종 매수자의 인지세 납부의무 이행 확인)와는 무관하게 중간 전매도 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중도금 대출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 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보증 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문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승강기의 용량, 탑승 위치 등) 등은 준공도서의 내용에 준하여 시공될 예정입니다.
- 본 아파트의 구조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합니다.

■ 부적격 당첨자의 명단관리 등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8조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제58조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58조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 제58조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다.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본다. 다만,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①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 ②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입주자 사전방문 안내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7호에 따라 입주지정 개시일 약 1~2개월 전에 특정일자(를) 통보하여 입주자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 일자는 추후 통보)
- 사전방문 확인 대상 :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 확인

■ 입주예정일 : 2026년 08월 예정 (향후 일정 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개별 통보함.)

-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업주체는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부터 2개월 전에 입주예정일을,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부터 1개월전에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을 통보할 예정입니다.
-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500호 또는 500세대 이상의 주택으로 입주지정기간을 60일 이상 제공할 예정입니다.
- 실입주일일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전쟁, 내란,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노동조합 파업 및 전염병 발생,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보상금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 입주지정기간 종료 후 입주하는 경우 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되며, 입주 시 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선수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지정기간 종료 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함.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와 시공사는 수분양자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채권회수를 위하여 입주관리(분양대금, 보증부대출금 등 채무 미완제 시 입주 및 소유권등기의 거부, 채무변제의 독촉, 가압류 등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적절한 조치를 위한 통지 등을 말함.)를 이행하며, 이와 관련하여 수분양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상대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으며, 또한 민·형사상의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습니다.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 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함)

■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돌봄센터, 피트니스 등 주민공동시설 (단,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은 별도 분양 시설물임)

■ 주차장 차로 및 출입구의 높이 : 서측 지하주차장 1층 진입 유효높이는 2.3m, 동측지하주차장 2층 진입 유효높이는 2.7m, 주차장 차로 폭은 6m 이상입니다.

■ 공동주택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공통 유의사항

구분		내용
공통	일반사항	• 각종 홍보물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재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 또는 마감 사양, 부대·편의시설, 조경 등의 추가 설치 및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단지와 충분히 비교 검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 홍보물 및 카탈로그 등에 기재된 마감재 수준 이상의 변경요구는 불가하므로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하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문 및 공급계약서와 기타 홍보물과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문과 공급계약서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 동법 시행령 제5조 및 관계법령에 의거 적용됩니다. •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단, 허용오차 범위(2%) 내에는 별도의 정산은 하지 않습니다.) •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의 대지지분은 각각의 시설별 전용면적 비율로 분할 하였으며, 아파트 각 세대별 대지지분은 전용면적 비율로 분할 하되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버림하였고, 각각의 버림에 대한 오차는 적정 할애하였으며, 또한, 준공 시 확정측량으로 인한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단, 허용오차 범위(2%) 내에는 별도의 정산은 하지 않습니다.) • 세대당 공급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절차, 즉 준공 시 확정측량으로 인한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며, 이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의거하여 지적 확정측량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대지지분의 감소는 잔금납부시까지 상호정산 합니다.(단, 허용오차 범위(2%) 내에는 별도의 정산은 하지 않습니다.) • 대지경계 및 면적은 최종 측량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용승인 시 대지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처리 시 입주자는 동의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의 내부 구조벽체 제거 및 변경은 불가하며, 이를 어길 경우, 민·형사상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실내 공기질 관리법」 제9조에 의거 공동주택 실내 공기질 측정결과를 입주인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단지 배치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 간의 향, 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사생활권을 일부 침해당할 수 있으며, 배치도 상 층수 혼선이 있을 경우 동·호수 배치가 우선함. 계약자는 동·호수 위치를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타사 및 사업주체의 타 단지의 마감 사양,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시설 등을 본 아파트와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인·허가 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 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주거동 입면 계획상 설치된 장식물 등으로 인해 일부 세대는 음영 발생 등 일조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동일한 평면이라도 위치(층수 및 세대)에 따라 입면 재료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옥외 조경공간은 모든 입주인을 위한 공동사용 공간입니다. • 옥외경관조명, 조경의 운영 및 관리에 따른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관리비 부과기준 등 일체의 비용은 관리규약에 따라 입주자 부담으로 운영됩니다. • 외부 시설물 가로등, 가로수 등은 공동주택과 비주거시설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물이며 공동으로 관리비를 정산하며, 정산방법에 관해서는 입주인의 협의에 의해 결정합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관리업체(관리사무소, 입주관리업체 등)는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가 선정하며,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발전기 배기 루버 설치로 비상 발전기 운전 시 소음, 냄새,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배관 동파방지를 위해 열선이 설치될 수 있으며, 사용에 따라 발생 되는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됩니다. • 공장생산 자재(타일, 인조석, 엔지니어스톤 등) 및 천연자재는 자재 특성상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합니다.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 내진설계가 되어있으며, 동 기준에 의한 내진 능력은 수정 메르칼리 진도등급 VII-0.260g입니다. •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 간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공동주택 바닥충격을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0-212호)을 준수하며, 바닥충격음 성능등급은 국가 공인 표준시험동에서 시험한 완충재의 시험성적서에 따른 등급이므로, 추후 실제 세대의 성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단지 배치계획에 따라 건물 상호 간섭, 지형물 및 기타 구조물로 인한 조망,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 등의 자료를 통해 충분히 확인하고 계약 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 수목의 생육과 조기 활착을 위해 식재 시 뿌리분에 감겨진 철사, 고무바 등은 일부 제거되지 않고 존치될 수 있으며, 이는 수목 고사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 • 일부 세대는 공사 시행 중에 품질관리를 위하여 선행시공이 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명칭 및 동 번호는 관계기관의 심의 결과에 따라 공급 시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본인이 확인하여야 합니다. •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텔은 별도의 분양시설로서 공동주택단지와 별도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으며 지상 부위의 차로 등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일체의 점유권 등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입주인에게 인계된 이후 발생하는 옥외공간의 모든 시설의 관리책임 및 이에 따른 부담비용은 입주인에게 있습니다.

구분	내용
	• 개인 부주의로 인한 옥외공간에서의 안전사고 발생 시에는 입주민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 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일부 세대의 경우 서비스면적 확보 및 발코니확장을 고려한 평면설계로 기존의 설계도 등의 자료를 통하여 충분히 확인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 각 세대의 배치에 따라 조망과 향, 일조량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각 세대 중 인접 동 및 인접 단지에 의한 시각적 간섭 발생이 있음을 확인한 후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가 계약체결 시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 관계를 확인하고 계약체결 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 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 외부계단 및 엘리베이터 인접세대는 소음발생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 및 지상 주차장 램프 인접 주동은 하부에 위치한 세대 내에서 주차장 램프 이용에 따른 소음, 진동, 눈부심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동 조합으로 인한 요철과 입면의 장식 등으로 인하여 일조, 조망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옥상구조물과 지붕재료의 형태와 구조는 안전 및 시공구조상 실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에 적용된 각종 입면 및 마감, 색채에 대한 디자인 일체는 사업주체의 고유한 자산이므로 인·허가 등 중대한 변경 사유 발생 및 마감 수준 저하가 아닌 경우 입주자에게 별도의 동의 절차를 받지 않습니다. •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 제3항에 해당되지 않는 설계변경 및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실 대지 측량 결과, 관련 법규의 변경, 인·허가의 변경, 사업계획승인변경 및 신고, 대지지분 정리 등에 따라 본 계약 물건의 견본주택, 단지 배치, 단지 내 도로 선형, 조경(수목, 시설물, 포장 등), 동·호수별 위치, 각종 인쇄물과 모형도 상의 구획선, 단지 내 시설물 (DA 등의) 설치 위치, 크기 및 개소는 설계도면 등의 표시, 대지지분 및 분양면적 등이 계약체결일 이후 입주 시까지 일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및 지하주차장의 기초구조는 굴토 후 지내력시험 결과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으며, 설계변경 필요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사용승인 전·후 최종 인·허가 도서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 건축물 상층부에 의장용 구조물, 태양광 설비, (위성)안테나, 이동통신 중계기, 피리침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에 설치되는 미술작품은 미술작품설치 미술작품심의위원회 등 인허가 절차 결과에 따라 위치, 형태 등이 결정되며, 미술품 설치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경관조명, 공용조명, 단지홍보용 사인물, 영구배수시스템(적용시), IoT(사물인터넷)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인·허가	• 각종 홍보물은 2022년 11월 사업계획변경승인 도면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최종 시공은 준공도면에 의거하여 시공됩니다. •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마감재 품목 등은 편집과정 상 오타 및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최종 시공은 준공도면에 의거하여 시공됩니다. • 홍보물에 표시된 주변 개발계획 및 각종 시설(도로, 학교, 차도, 광장, 공원, 녹지 등)조성계획은 각 시행주체가 계획 또는 예정 중인 사항을 표현한 것으로 시행주체 및 국가정책에 따라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 사업장은 소방내진설계가 적용되는 아파트입니다 • 본 아파트는 현장여건,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건축법」, 「주택법」 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변경 인·허가를 진행하므로 이점 양지 하시기 바랍니다. • 인·허가 관청에서 본 아파트 단지의 건설사업에 관하여 실시한 각종 심의 및 인·허가 사항과 그 조건을 이행하기 위한 설계변경(관련 도시계획시설 변경 포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지 내·외부 여건	• 청주테크노폴리스 건설사업은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타 부지에 대한 조성공사 및 건축공사가 일부 진행 또는 입주 후에 시행될 예정으로 공사로 인한 소음 및 비산먼지, 교통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청주시 경관상세계획에 따라 자전거도로, 식재조성공간, 보행자도로 등으로 사용되는 대지경계선 안쪽 전면경지는 준공시 공공(청주시청 또는 충북도청)에서 유지관리를 위한 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인근에 위치한 근린시설, 주차장시설, 주유시설, 종교시설, 편의시설, 오수펌프장, 통신탑, CCTV탑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대기, 소음)오염 및 유해시설 등은 공동주택 환경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계약자는 현장 등을 확인한 후에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 인근에는 주택건설사업, 도시계획도로 공사 등의 기반시설 공사가 진행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소음 및 분진,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 내 및 인근의 신설, 확장 도로는 인·허가 추진일정 및 관계기관 협의 결과 등에 따라 도로 선형, 개설 시기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에 면한 인접 대지 레벨은 향후 변동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단지 경계부의 옹벽 및 사면의 종류, 노출 범위, 높이, 길이, 형태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옹벽 구조물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시공 구조상 보강시설물이 설치되는 경우 점용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당 사업지 및 인근 사업지구 기반시설의 위치, 혐오시설 유무, 도로, 하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냄새유발시설, 주변 개발 등의 환경에 대해서는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현장을 방문하여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 사업지 내 도시계획도로의 레벨 및 시설물은 실시계획인가 및 관련 심의 등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인·허가를 득한 사항에 적합하게 조성될 예정입니다. • 당 사업지 주변 토지에 개발계획은 당 사업자와 무관하며, 개별 건축허가, 개발행위 등의 진행 사항은 개별 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 사업시행자가 부지조성 후 매각/기부채납하는 시설부지의 개발 및 시설설립 등의 일정은 관련 기관에서 확정하며, 추후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사업지 및 도로 단지 주변 현황		광역도로 및 광역교통망 등 도시계획에 의한 기반시설 설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하여 진행하는 사항으로 일부 변경 및 취소, 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귀책사유가 없습니다.
	사업지 및 도로 단지 주변 현황	- 단지 남측의 공공보행도로 및 단지의 3면이 도로에 접하여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니 현장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향후 소음영향평가 실시 후 결과에 따라 방음벽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사업부지면적, 대지지분 등은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 또는 공부정리결과에 따라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단, 허용오차 범위(2%) 내에는 정산하지 않음.) -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경계에는 투시형 휀스 (방음벽 포함) 또는 조경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행정관청의 지침 등에 따라 설치 여부, 구간, 재질, 규격 및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지 내 옹벽지지를 위해 지하 매설물이 설치될 경우 영구 점용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되어 부과됩니다. - 당 사업지 인근에 청주공항 및 공군 제17전투비행단이 위치하고 있어 항공기 이착륙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항공기 관련 소음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학교	- 학교 배치에 관한 사항 - 유치원 : 제7권역* 공립유치원 분산 배치 (*제7권역 : 봉덕초병설유, 봉명초병설유, 솔밭초병설유, 운천초병설유, 증안초병설유, 직지초병설유, 진흥초병설유, 청주내곡초병설유, 흥덕초병설유) - 초등학교 : 인근 학교 임시배치(現 통학구역 청주내곡초등학교 배치 불가) - 중학생 : 청주 제2중학교군 내 분산배치 - 고등학생 : 청주시 및 도내 전체 고등학교 지원 분산 배치 - 테크노폴리스 S2블록은 現 통학구역인 청주내곡초등학교에는 학생배치가 불가능하며, 인근 학교에 개발사업 유입학생 전체를 임시 배치합니다. - 학생 배정계획은 향후 입주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해당 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며, 사업추진계획의 변동 및 관할 기관의 정책 변화에 따라 분양 당사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충청북도교육청 및 해당 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등학교의 일반고 학군 학생 배정방법은 충청북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 내 학생 배정방법을 따릅니다.
단지	동별현황	- 각 동의 일부 세대는 차량 및 보행자 통행으로 인한 빛의 산란, 소음, 사생활 침해, 쓰레기보관소의 악취, 분진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201동 지상 1층에 어린이집, 돌봄센터, 관리사무소, 지상 2층에 작은 도서관, 201동과 205동 사이에 경로당 및 주민공동시설이 위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일부 저층 세대에서는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및 주민공동시설용 공조기 및 실외기실 설치로 인해 일부 세대는 소음 및 진동,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동 남쪽에 비상차량 출입구가, 201동과 202동 사이, 204동과 205동 사이 주차장 출입구가 설치되어 이로 인해 소음 및 진동, 먼지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동 옥상에 B.I.설치를 위한 옥상구조물과 경관조명이 설치되어, 상층부 세대에 야간 빛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동 주변에 기타 급배기용 D.A(Dry Area) 및 지하주차장 채광을 위한 탐라이트 등 외부시설은 단지배치도를 참조 바랍니다. 사업승인 및 분양 후 D.A 등의 기타 외부시설의 위치, 크기, 개수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저층 세대는 조경 및 동출입구 등 각종 구조물에 의해 조망 및 채광에 불리한 타입이 있으니 계약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1동 202동 사이 비상차량 출입구에 문주 구조물을 설치할 예정이며, 구조물로 인해 세대 조망에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부 동은 주변 건물 및 구조물, 단지 내 인접동 및 같은 동 다른 라인에 의해 조망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주출입구는 주변 여건에 따라 위치, 크기 및 구조 형식 등이 동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는 이삿짐용 사다리차 접근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외에 레벨차가 있는 구간에는 자연석쌓기, 비탈면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 부분에 인접한 세대는 조망권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동 상부에는 관련법에 따라 인명 등의 구조공간이 설치됩니다. - 동 필로티층 상부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주동 출입동선 및 기타 보행자안전에 필요한 부위에는 캐노피가 설치될 수 있으며, 캐노피 주변 세대에는 우수에 의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옥탑 및 옥상조형물 형태 및 마감재는 상세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지계획 (설계, 디자인, 마감)	- 배치도의 대지경계선, 구역경계선, 법면현황은 최종 측량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내부도로 및 조경선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여건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배치도 상의 각 시설의 명칭 및 내용은 인·허가 과정, 법규 변경, 공사여건 및 상품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계획은 본 시공 시 현장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으며 본 시공 시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용적률, 주차대수는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부대복리시설, 커뮤니티시설의 구성 및 레이아웃 위치, 마감재료 및 건축이용계획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단지 배치 및 층별, 향, 동,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조망권·소음진동·악취발생·사생활 침해 등 생활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 주거동의 동, 호수, 층별 위치에 따라 난간턱의 높이, 난간대의 형태 및 재질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동 출입구의 장애인용 경사로, 단지 외부 도로, 단지 내 도로(차도, 비상차도, 산책로, 지하주차장 경사로 등), 어린이집, 조정시설, 어린이 놀이터, 자전거보관소, 지하주차장 주차램프, 단지 주출입구 등과 인접한 세대는 소음, 빛공해 및 분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업부지 단지 구간에 조경식 살기 또는 옹벽이 설치될 수 있으며 추후 인·허가 조건, 미관, 구조물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태양광 설비, 설비 통기배관, 위생인테나, 공청 인테나, 이동통신 중계기, 피뢰침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명 및 빛의 산란에 의해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방송통신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 2에 따라 한국전파진흥협회(이동통신설비 구축지원센터)와 협의하여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옥외안테나는 옥상층(201동, 203동, 205동)에 설치되며, 중계장치는 옥상층(201동, 203동, 205동) 및 지하1층(헬륨)에 설치되며, 이는 향후 이동통신 통화품질 등의 성능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귀책사유가 없습니다. • 주요 구조체는 정밀구조계산에 따라 최적화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내력벽은 비내력벽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출입구 및 부출입구를 제외한 보행자 전용 통로는 개방형으로 시공되므로 외부인원의 통행 제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단지와 외부도로 사이의 경계 담장은 행정관청의 지침 또는 주변단지 민원에 따라 설치여부, 설치구간, 재질 및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배치도 상에 표현된 D.A의 위치 수량 및 크기는 변동될 수 있으며, 일부 D.A는 건물에 매립되어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스프링클러 배관 관경 및 기준 개수 등 소화 시설물의 기준은 수리 계산에 의해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조정공간의 형태, 도로의 선형, 포장 계획, 세부 식재위치 등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정공간에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환기창, D/A, 발전기 연도 등)이 노출될 수 있으며, 단지 내 통행로 등에 인접할 경우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각종 인입(상수도, 하수도, 도시가스, 한전 등)계획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여건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부에 전력 및 통신 인입을 위한 시설물, 전력 및 통신 맨홀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 시설물의 위치는 한국전력공사, 기간통신사업자와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배치 특성상 단지 내외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와 단지 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일부 세대는 소음 및 전조등 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간섭이 발생 될 수 있습니다.
외관계획	• 외창부 벽에 입면 디자인을 위한 돌출부가 있을 수 있으며, 일부 세대의 외벽 및 발코니, 지붕 등에 장식용 구조물 등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건물의 외관 디자인(색채, 줄눈 계획, 입면 패턴, 마감재, 옥상 구조물 등), 공용부 디자인(동 출입구, 지하층 출입구, 필로티, 캐노피, 주차장 램프, 경비실, 부대시설 등), 외부 시설물(문주, DA, 자전거보관소, 쓰레기 분리수거함 등), 조경 디자인, BI 위치 및 내용, 난간의 형태, 옹벽 디자인 등은 설계 및 인·허가 과정, 발주처 협의에 따라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으며, 사업주체의 고유한 업무 영역으로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아파트 저층부는 석재 및 페인트 등 기타 자재로 마감되고, 주동 형태에 따라 석재 및 페인트 등 기타 자재의 적용비율은 동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인·허가 및 현장여건에 의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문주는 단지여건에 맞춰 형태, 크기, 배치가 결정되며 문주 설치로 인해 주 진입부에 위치한 일부 저층세대에서는 세대 조망에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외부 마감재 사양 및 디자인은 동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본 아파트의 마감재 사양 및 디자인에 대해 타사 및 사업주체의 타 단지를 비교하여 추가 설치 또는 교체 등의 요구를 할 수 없으므로 충분히 비교 검토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에 적용된 외관특화, 입면, 색채 및 마감재 등 디자인 일체는 변경될 수 있으며, 인·허가 등 중대한 변경 사유 발생 및 마감수준 저하가 아닌 경우 입주자에게 별도의 동의 절차를 받지 않습니다. • 아파트 옥상 및 외벽에 조형물 및 로고(BI) 등이 설치되어 일부 세대 일조, 조망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LED조명으로 인하여 인접 세대는 빛반사로 인한 눈부심, 낙수 등으로 인한 소음 등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옥상 옹벽파라펫은 구조검토에 의하여 높이 및 형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경관조명은 빛공해 심의 결과에 따라 설치 및 작동에 제약이 있거나 위치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공용시설	• 주민공동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부대시설에 인접한 세대는 해당 시설이용 및 부속시설물(에어컨실외기, 배기팬, 설비시설, 쓰레기 수거시설 등)로 인해 일조권·조망권·소음진동·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계획된 부대복리시설(어린이놀이터, 커뮤니티, 어린이집 등)로 인해 아파트 세대의 실내가 투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공동시설의 구체적인 운영방법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후 입주자에 의해 결정됩니다. • 주민공동시설의 기본 마감 외의 시설운영을 위한 내부 집기류(이동 가구, 비품, 서적, 스탠드 등)는 제공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제12조에 의거 사업주체는 입주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입주자정기간 종료일 이후부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후 새로운 주택관리업체를 선정할 때까지 주민공동시설(커뮤니티센터) 등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반 비용은 동법 제23조에 의거, 관리비에 포함하여 개별 세대에 부과됩니다. • 커뮤니티시설 등의 부대시설의 성능개선 또는 인·허가 협의 결과에 따라 실시공 시 위치, 동선, 실내구획, 입면 디자인, 마감재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 단지 내에 쓰레기 분리수거장, 재활용 보관소 등이 설치되어 이로 인한 일부 세대는 냄새 및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쓰레기 수거 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공동시설(커뮤니티센터)에는 입주자정기간을 전후하여 입주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입주관리업무를 진행하며, 입주 후 약 24개월까지 AS업무를 위한 사무실 및 창고가 설치되어 운영됩니다. 각 운영 기간은 단지 사정에 따라 연장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수도 및 전기세 등은 관리비로 부과됩니다. • 지하주차장 구조검토 결과에 따라 기둥, 보, 벽체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주민공동시설 내 기둥이 추가되거나 공간계획과 인테리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경로당 및 보육시설의 난방 급탕을 위한 보일러 연도가 외부에 설치될 수 있으며 인접 세대는 조망권, 소음, 진동, 열기, 사생활 침해 등 생활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 지하주차장에는 각 층 배관, 덕트 등이 노출될 수 있으며, 배수펌프 작동시 소음,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의 환기를 위해 환기 가동시 소음,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및 부속시설의 에어컨 실외기 설치로 인해 주변 인접 등에 소음 및 진동이 전달될 수 있으며, 설치 시 현장여건에 따라 위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관리사무소, MDF실, 방재실 등은 공동주택,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이 분리 사용하도록 설계에 반영되었습니다.
	공용설비 시스템	- 부력방지를 위한 영구배수 공법 등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용 전기세 및 하수도 요금 발생되고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됩니다. - 지하주차장의 일반 집수정의 배수펌프는 공용사용 시설로 전기세가 발생되고 해당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됩니다. - 지하층 엘리베이터홀 및 기계전기실에 설치되는 제습기등 설비 및 기계장치의 가동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합니다. - 도시가스 공급을 위하여 단지 내 정압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 위치 및 제반 사항은 도시가스 공급업체와의 최종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도시가스 원격검침계량기(AMR)가 설치되는 아파트로 교체 비용은 가스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지하주차장 등 동파우려 배관에는 배관 동파방지를 위해 열선이 설치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합니다. - 공용부위 조명 및 경관조명, 보안등, 조경용 조명, 싸인용 조명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지하주차장 출입구 및 지하시설물의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외부계단, Top Light, 자연환풍, DA)과 인접한 저층 세대는 소음 및 조망 등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와 인접한 세대는 엘리베이터 운행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계실, 환풍 및 이와 유사한 기계 설비 장치가 설치되는 설에 인접한 곳에서는 장비로 인한 소음, 진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무인택배시스템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되며, 설치 위치는 단지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 및 기계전기실에 설치되는 시설 및 장비와 관련하여 수분양자는 특정 제품(브랜드)의 설치를 사업주체에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주동 옥상에는 태양광 발전설비가 설치되며 설치 위치 및 개수, 사양, 용량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차장	- 지하주차장 천정에는 각종 배관, 배선, 장비 등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주차장은 총 1,127대(공동주택 912대, 오피스텔 179대, 근린생활시설 36대)로 계획되어 있으나 현장여건 상 준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구조 형식상 지하주차장의 주거동 지하부 주차구획구간은 기둥 및 벽으로 인하여 차량도어 개폐 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화재안전기준에 의거 옥내소화전의 배치상 지하주차장의 일부 주차구획은 차량도어 개폐 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주차장은 지하 1층~지하 2층이며, 지상주차장은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주차장으로서 공동주택 입주민의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각, 주차장 출입구 및 주거동 연결통로의 길이 및 형태가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주동 지하층 및 옥탑 구조는 공사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피트(PIT)공간의 구획, 높이 및 면적, 비내력벽의 두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기차 충전시스템은 법규에 따라 설치되며, 주차장의 위치 및 구조에 따라 배치 위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단지내 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개선을 위하여 설계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구간은 열관류율 기준에 의거 단열 및 마감재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차장 내부 색채디자인은 준공시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서측 지하주차장 1층 진입 유효높이는 2.3m, 동측지하주차장 2층 진입 유효높이는 2.7m, 주차장 차로 폭은 6m 이상입니다.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의 대지지분은 아파트와 별개로 산정되어 있으며, 아파트부지와 경계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의 외관과 내부 건축계획의 변경은 아파트 계약자와 무관하게 설계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의 분양 시점에 따라 MD계획이 미확정될 수 있으며, 추후 MD계획 확정에 따른 면적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용 쓰레기 분리수거장은 별도로 설치되어 있으며 사용성 및 지자체 조례 등의 최종 검토결과에 따라 위치 및 개소가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용 실외기 및 각종 장비류로 인하여 인근동에 일조권, 조망권, 소음진동, 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상 1층에 오피스텔 주차장 179대 및 근린생활시설 주차장 36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해당 주차장은 공동주택(아파트) 주민의 이용이 제한됩니다.
단위 세대	평면	- 본 사업은 같은 주택형이라도 면적이 조금씩 상이 할 수 있으며, 위치에 따라 평면이 좌우대칭이 될 수 있습니다. - 주택형별 전용면적, 공급면적 및 계약면적의 소수점 이하 숫자는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 세대의 천정 높이는 2,300mm으로 시공됩니다. - 입주 시 세대 내에 침실별 가구(장롱, 불박이장)를 개별적으로 추가 설치 시 필히 실측하여 설치하기 바랍니다. - 세대 내의 위치에 따라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 단위세대 현관, 현관창고, 비화장발코니, 실외기실, 대피공간, 보일러실(다용도실) 등에는 바닥 난방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구분	내용
발코니	- 발코니는 계획용도에 따라 수전, 드레인 또는 선홀통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으며, 위치와 개수가 변경될 수 있고,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확장하지 않은 발코니는 준 외부공간으로서 난방시공 및 일부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으므로,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보관된 물품은 훼손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발코니 외부 축벽 및 천정에 최소 결로방지를 위한 추가 단열재 및 마감재가 시공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코니 내부 폭 및 크기가 축소될 수 있습니다. - 세탁기와 실외기가 설치되는 공간 또는 발코니에 수전이 설치되는 곳은 겨울철 동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창문 닫기 및 보온 조치 등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환기 시스템 설치 또는 시스템에어컨 선택에 따라 실외기실 또는 다용도실 천정에 덕트, 배관 등이 노출 시공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미관이 저해되거나 천정고가 낮아질 수 있고, 내부 마감(창호와 그릴, 전등의 크기 및 위치) 및 건축 입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화재 등 유사시에는 하향식 피난구를 통해 대피하여야 합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공간에 하향식 피난 사다리가 설치되며, 디자인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고 화재시 하층세대로 피난 할 수 있는 공간이므로 그 사용 및 유지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커튼박스의 깊이 및 너비는 배관 설치, 환기덕트 설치, 화장실 배기호스 등에 따라 커튼박스의 깊이 및 너비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는 결로에 의한 하자 등을 방지하기 위해 콘센트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창호	- 저층 세대의 외벽마감재 설치에 따라 외부창호는 다소 축소 및 변경될 수 있으며, 벽체 두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확장 시 아파트 외부창호는 일부 세대의 발코니 장식물 부착 및 내풍압구조 검토에 따라 세대별, 층수별로 창호 사양(창틀, 하드웨어, 유리 등)이 변경 및 축소될 수 있으며, 세대에 설치되는 창호의 개폐 방향, 날개 벽체 및 분할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외부창 및 내부창호의 사양(제조사, 브랜드, 디자인, 개구부 및 프레임 사이즈, 창틀, 하드웨어, 유리두께 등)은 공급업체 사정에 따라 견본주택에 설치된 제품과 상이 한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나 동등급 이상으로 설치됩니다. - 현장여건 및 입주자 사용성 개선을 위해 목문의 사양(문틀의 폭, 재질, 개폐방향,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타입별로 대피공간과 실외기실 위치가 상이한 관계로 창호 높이 및 천정의 형태, 높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창호에 설치되는 방충망의 형태는 본 공사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구 및 마감재	- 불박이 가구(신발장, 불박이장, 주방가구, 욕실장 등)로 가려지는 벽, 바닥, 천정의 마감재는 설치되지 않으며, 가구 하드웨어(힌지, 레일, 조명, 스위치 등)는 본 공사시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적용되는 마감자재(석재류, 타일류, 상판류, 시트류 등)는 자재 특성상 색상, 무늬 및 패턴 등이 균질하지 않을 수 있으며, 본 공사시 나누기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형별 옵션선택에 따라 가구 및 수납계획(디자인, 크기, 도어갯수 등), 우물천정 크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욕실 출입문(부부, 가족)은 본공사 시 PVC 계통(ABS) 도어로 시공됩니다. - 인접세대 간 사생활 침해 최소화를 위해 일부 세대 아트월 방향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배선기구, 조명기구, 월패드, 설비배관 등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욕실에 설치되는 위생도기, 수전류 및 각종 액세서리류(수건걸이, 휴지걸이 등)의 설치 시 현장여건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냉장고장의 형태는 최초 계약 선택사항(유상옵션)에 따라 설치되며, 변경이 불가하오니 계약 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최초 선택사항에 따라 냉장고(입주자 직접 설치한 가전)가 제품사양에 따라 냉장 고장에서 돌출될 수 있습니다. - 세대별 공간에 따라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 욕실거울, 수전류, 각종 액세서리류(수건걸이, 휴지걸이 등) 및 샤워부스, 철재류는 녹발생 방지를 위하여 알칼리나 산성세제가 아닌 중성세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목창호, 시트판넬 등의 고정을 위해 타카 자국이 보일 수 있습니다. - 다용도실 또는 발코니에 건조기 사용시 온도 습도가 상승될 우려가 있어, 결로 및 기타 하자방지를 위하여 환기등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욕실장 및 샤워부스의 디자인 및 디테일은 본공사 시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선반은 본공사 시 형태, 색상, 하드웨어의 사양 등이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설치 디테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현관중문(옵션)은 본 공사시 형태, 재질, 색상, 하드웨어의 사양 등이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에 설치되는 PVC단열 도어는 본 시공 시 동등 성능 이상의 다른 제품으로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침실과 욕실 도어에 손끼임방지 장치가 제공됩니다. - 세대 내 적용되는 유리류는 자재 특성상 조명 및 각도 등에 따라 색상이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적용되는 대형타일 및 석재 등의 마감재는 재료적 특성상 인접타일과 일부 단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색상차이, 자연무늬(베인 등)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기본형 또는 확장형 평면에 제공되는 품목(주방가구, 냉장고장, 드레스룸 선반 등)이 서로 차이가 있으므로, 계약 전 확장시 제공되는 품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유상) 옵션, 공간옵션 등에 따라 타입별 평면 및 마감재 적용 부위가 상이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초 계약된 옵션선택에 따라 마감재, 벽체 및 가구계획, 일부 공간의 조명, 가구 하드웨어(힌지 및 레일 등) 등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유상옵션 중복선택으로 인한 자재증감 비용변동은 없습니다.

구분	내용
전기·기계·설비	• 환기시스템 및 욕실배기, 주방배기를 위하여 외부에 환기캡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건축 입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주방 및 욕실배기가 당해층 직배기 방식으로 인접 세대에 냄새가 전달되거나 인접 세대에서 냄새가 전달될 수 있습니다. • 욕실에는 바닥배수구와 환기를 위한 욕실팬이 설치됩니다. • 욕실 내 설치되는 배수구 및 환기팬, 천정 점검구의 위치 및 사양, 크기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내 사위부스바닥과 욕조바닥에는 난방코일이 설치되지 않으며, 별도 제어용 온도조절기가 없어 해당구간의 온도조절기를 통해 작동하여야 합니다. • 욕실내 난방은 싱크장에 부착되는 난방계통도를 확인하여 해당 온도조절기를 조작하여 침실 또는 별도공간과 함께 난방하여야 합니다. • 세대내 화장실 물내림 소음이 발생할 수 있고, 욕실내 습도, 온도가 높아 양변기 물탱크 주변에 자연현상으로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식탁용 조명기구의 위치는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 정하였으며, 시공위치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 세대 내부의 욕실단차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해 준공도면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욕실 출입 시 욕실문에 의한 신발 걸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환기 디퓨저, 가스배관 및 계량기 위치는 공사용 설계도면 기준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가스배관은 설치 위치에 따라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환기설비의 필터는 사용주기에 따라 교체주기가 변동될 수 있으니 이점 인지해주시기 바랍니다. • 에어컨을 입주자가 직접 설치하는 경우 실외기 공간을 감안하여 에어컨 성능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합니다. • 에어컨 실외기는 1대 설치를 기준으로 마련되어 있으니 이점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 콘센트 위치는 실시공시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다용도실 수전의 위치는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기 스위치의 위치는 추가 선택품목옵션 선택 등에 따라 위치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에어컨 설치 시에는 별도의 실외기 고정가대 및 에어가이드 설치를 하여야 원활한 사용이 가능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스프링클러 및 소방감지기는 본 공사시 설계도면 및 화재안전기준에 의해 시공됩니다.(본 공사시 상기 사항 적용에 따른 일부 마감 사양, 우물천정, 커튼박스, PL창호, 주방가구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위세대 외벽에 가스입상배관이 설치될 수 있으며, 가스계량기는 실내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욕실, 드레스룸, 알파룸 및 펜트리의 난방제어를 위한 온도조절기는 별도로 설치되지 않으며, 난방배관 설계에 따라 인근 온도조절기(거실용 또는 침실용)에 의해 통합제어 될 수 있습니다. • 침실, 알파룸이 옵션선택에 따라 대형 드레스룸 및 펜트리로 변경될 경우 온도조절기는 설치되지 않을 수 있으며, 난방배관 설계에 따라 인근 온도조절기(거실용 또는 침실용)에 의해 통합제어 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도시가스 연료를 사용하며, 세대별 보일러를 설치한 개별난방 방식이 적용됩니다. • 세대보일러는 적절한 용량을 선정하였으나, 온수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 온수 사용에 따른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는 배관이 시공되며, 상층부 세대에서 물사용시 낙수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 다용도실내에는 보일러가 설치되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으며, 실외기실에는 전열교환 환기장치가 설치되어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1층 부대복리시설 인접 및 상부층 세대는 소음 발생으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으며, 부대복리시설, 피트층, 피난층의 인접층 및 최상층은 냉난방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 각 세대 내 전기분전반 및 통신단자함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9-667호) 제171조에 의거하여 신발장, 옷장 등의 은폐된 장소가 아닌 실벽 등 눈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되며 분전반의 형태, 규격, 사양, 디자인 등은 실시공 시 현장여건에 맞게 시공될 예정으로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최초 계약 세대에 천정형 시스템에어컨이 미선택 된 경우 거실 및 방에는 스탠드형 및 벽부형 냉매배관이 설치됩니다. • 입주 후 세대 내 조명기구 및 스위치와 관련된 인테리어공사 또는 하자보수 이슈 발생 시, 반드시 해당 제조사로 문의 바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발생하는 제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공사는 귀책 사유가 없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선택에 따라 전기분전반 내 전기차단기 설치가 상이할 수 있으며, 해당 옵션을 선택하지 않을 시 해당 기능을 위한 전기차단기는 미설치 됩니다. • 세대 벽체 및 바닥 내부에는 전기/통신용 배관 및 각종 설비배관이 매립되어 있으므로 못박음이나 드릴을 이용한 작업시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 월패드에 표시되는 원격검침량은 실제 검침량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천장마감재가 불연재 및 준불연재, 난연재로 마감된 이중 천장 내 전기박스 커버 설치는 제외됩니다. • 세대 내 전기기구 내부 방음코킹은 시공 제외됩니다.

10 기타사항

■ 친환경 주택의 성능 수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제2호

의무사항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필요시)
건축부분 설계기준 (제7조제3항제1호)	단열조치 준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를 준수함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를 준수함
	방습층 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준수하여 방습층을 설치
기계부분 설계기준 (제7조제3항제2호)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 제1호에 의한 설계용 외기조건을 따라야 한다.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 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을 따라야 한다.
	고효율 가전용품일률(다목)	적용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이상 제품을 사용
	고효율 전동기(라목)	적용 * 전동기 (단, 0.7kW 이하 전동기, 소방 및 제연 송풍기용 전동기는 제외) 는 산업통상 자원부 고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마목)	적용 * 난방, 급탕 및 급수펌프는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그 평균 효율이 KS 규격에서 정해진 기준 효율의 1.1배 이상의 제품을 사용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적용 * 세대 내에 설치되는 수전류는 「수도법」 제15조 및 「수도법시행규칙」 제1조외2, 별표2에 따른 절수형 설비로 설치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비를 설치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적용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서 고효율 법안기로 정한 제품을 적용
전기부분 설계기준 (제7조제3항제3호)	조명설치(다목)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를 설치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라목)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장치(마목)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4호에 의한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 설치
	실별 온도조절장치(바목)	적용 *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의 사용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점멸되는 스위치를 설치
	태양광 발전설비	적용 * 세대 내 각 실별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를 설치
		* 옥상에 태양광 발전설비가 설치되며, 시설물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단, 최초 인허가시점 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에 의거 인증서 표기

공동주택 성능등급 인증서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1. 공동주택명 : 청주테크노폴리스 S2블록 주상복합 신축공사
2. 신청처 : 신원자산신력 주식회사
3. 대 지 위치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송정동 513-2 일필
4. 성능 등급

가. 소수 관련 등급

나. 구분 관련 등급

다. 환경 관련 등급

라. 생활환경 관련 등급

2022년 9월 28일

청주전과관리소장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예비인증서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예비인증서

이 건물은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 업무처리 지침에 의해 다음과 같은 등급으로 평가되었음을 인증합니다.

※ 이 인증서는 2021년 11월 인증기준으로 평가한 결과입니다.
※ 이 인증서를 각종 광고 및 건물건물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예비인증을 받았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려야합니다.

신 청 인

주 소

이 름

주 소

주 소

구 분

인 증 내 용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초고속정보통신건물

2022년 09월 28일

청주전과관리소장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녹색건축 예비 인증서

건축물 개요

인용 개요

인용 등급

2022년 9월 21일

한국환경건축연구원 이사장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7.1.26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건축물 개요

인용 개요

인용 등급

2022년 09월 06일

한국부동산원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단위 : 원, 부가가치세 별도)

구 분	건 축	소방, 정보통신	전 기
회 사 명	에이앤유씨엠건축사사무소 주식회사	주식회사 대성종합기술단	주식회사 케이제이엔지니어링
감리금액	2,661,975,000	560,000,000	517,706,363

※ 상기 감리금액은 최초 입주자모집 공고시 금액으로 감리회사와의 계약변경 등으로 증감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별도 정산하지 않습니다)

■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원가 공개

- 본 주택은 「주택법」 제57조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 아파트 단지 분양총액의 범위내에서 각 항목별 총액만을 공개하고,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등을 위해 사후 검증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 아래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으며, 추후라도 이는 분쟁의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 분양가격 공시내용

(단위 : 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금액	구분			금액	구분			금액
택지비		택지매입원가	30,873,805	공사비	건축	철근콘크리트공사	42,277,511	공사비	기계 설비	위생기구설비공사	757,242
		기간이자	1,084,684			용접공사	-			난방설비공사	422,915
		필요적 경비	1,614,208			조적공사	2,413,468			가스설비공사	657,867
		그밖의 비용	793,961			미장공사	3,357,132			자동제어설비공사	158,689
		계	34,366,658			단열공사	-			특수설비공사	1,109,285
공사비	토목	토공사	1,212,511			방수, 방습공사	1,347,320		공조설비공사	-	
		흙막이공사	-			목공사	-		전기설비공사	4,836,180	
		비탈면보호공사	-			기둥공사	6,275,941		정보통신공사	1,940,480	
		옹벽공사	-			금속공사	3,993,431		소방설비공사	5,677,389	
		석축공사	-			지붕 및 흙통공사	-		승강기공사	2,410,356	
		우수, 오수공사	355,896			창호공사	5,987,065		일반관리비	6,186,582	
		공동구공사	-			유리공사	1,324,210		이 윤	3,815,482	
		지하저수조 및 급수공사	-			타일공사	2,378,032		계	129,108,737	
		도로포장공사	188,732			돌공사	2,780,149		설계비	2,378,249	
		교통안전시설물공사	-			도장공사	1,977,457		감리비	3,276,642	
	정화조시설공사	-	도배공사	2,438,118	부대비	일반분양시설경비	9,737,785				
	조경공사	2,583,713	수장공사	4,860,831		분담금 및 부담금	3,798,324				
	부대시설공사	-	주방용구공사	-		보상비	-				
	공통가설공사	1,983,619	그 밖의 건축공사	1,588,436		그 밖의 사업비용 경비	50,011,867				
	가시시설물공사	4,593,524	급수설비공사	2,426,749		계	69,202,867				
건축	건축	지정 및 기초공사	2,146,161	급탕설비공사	144,053	그밖의 비용	20,051,438				
		철골공사	-	우수 배수설비공사	2,502,211	합 계	252,729,700				

※ 「주택법 시행령」 제60조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에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의 분양가와 사업주체가 해당주택을 취득 및 재공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비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위의 분양가격 공시내용에 해당 비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주택법 제57조 제7항에 의거한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사결과

- 아래의 택지비 및 건축비 가산비는 상한금액 산정을 위한 기준금액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 「주택법」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개하며, 상한금액 이하로 책정된 분양가격 공시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위 : 원)

항목			금액	항목			금액
1.택지비	택 지 비		30,873,805,069	3.기본형 건축비	지상층 건축비		150,862,897,586
	법정 택지이자		1,084,684,552		지하층 건축비		32,475,838,249
취득세	취 득 세	1,234,952,202	소 계(기본형 건축비)		183,338,735,835		
	교육세(취득세)	123,495,220			법정초과 복리시설 건축비		912,367,942
재산세	재 산 세	129,669,980	4.건축비 가산항목	인텔리전트 설비 공사비		홀네트워크	5,449,436,300
	교육세(재산세)	25,933,989				초고속통신특등급	1,634,248,770
재산세도시지역분	90,768,983	에어컨냉매배관				2,631,608,610	
기계환기설비	2,473,403,570						
등기수수료	보 수 료	9,111,691		공동주택성능등급		3,017,257,951	
	인 지 세	276,213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말뚝박기 공사비				지하주차장 층고 증가 공사비		579,633,350	
흙막이 및 차수벽 공사비				법령 개정 전기자동차충전시설		89,896,293	
택지와 관련된경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376,157,200		분양보증수수료		795,360,971	
		가스시설부담금				65,475,976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소 계(건축비 가산항목)		20,051,495,801		
					전기인입부담금	163,300,000	
소 계(택지비 가산항목)			소 계(기본형건축비 + 건축비 가산항목)		203,390,231,636		
18,465,720,735			합계		252,729,757,440		
소 계(택지비 + 택지비 가산항목)			49,339,525,804				

■ 분양보증

- 본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은 공동주택입니다.

보증번호	보증금액(원)	보증기간
제 01282023-101-0002200호	₩ 176,910,790,000원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로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 제1조 (보증채무의 내용)

- 공사는 「주택도시보증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 제2조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유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증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증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
 (예시 : 홀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오피스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다만, 사양선택 품목과 관련한 금액이 보증금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 ② 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택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 제4조 (보증사고)

- ① 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택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택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택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② 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려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 (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같을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관리형 토지신탁

- 본 분양 목적물은 「신탁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탁자 (주)피앤엘과 토지를 수탁 받은 수탁자 신한자산신탁(주) 간에 체결한 관리형 토지신탁 계약(2021.09.14.)에 따라 관리형 토지신탁 방식으로 시행 및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수탁자인 신탁사가 분양사업자가 되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4조 2항에 따라 별도의 신탁 계약 체결을 요하지 않으며, 계약자는 다음 사항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 본 사업은 위탁자 (주)피앤엘과 수탁자 신한자산신탁(주) 간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 계약에 따라 신한자산신탁(주)가 공급하는 건으로서, 공급 계약상의 매도인의 모든 이행 책임은 신탁 계약에 의거 위탁자인 (주)피앤엘이 부담합니다.
- 본 분양 목적물은 위탁자 (주)피앤엘과 수탁자인 신한자산신탁(주) 사이에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에 따라 공급하는 것이며, 신탁해제나 해지등의 사유로 위탁자 겸 수익자와 수탁자가 체결한 신탁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또는 수분양자로 개별 소유권이전등기 경료됨과 동시에 매도인으로서의 수탁자의 모든 권리와 의무(하자보수 및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의무 포함)는 위탁자 겸 수익자에게 면책적으로 포괄승계되며, 수탁자(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도 분양계약의 변경 등 별도의 조치 없이 위탁자겸 수익자에게 면책적으로 포괄승계됩니다.
- 분양대금이 토지비, 공사비, PF대출금의 상환 등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분양계약 목적물은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신탁재산으로서 매도인 또는 공급자인 수탁자는 일체의 책임 및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예외적으로 수탁자가 매도인 또는 공급자로서의 책임 및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위 책임 및 의무가 확정되는 시점에 수탁자에게 현존하는 신탁재산의 한도 내에서 부담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수분양자는 수탁자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하자보수책임은 시공사에게 분양대금 반환책임 등 사업시행자의 책임은 위탁자에게 있습니다.
- 수분양자는 수탁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체결된 각종 개별계약(위탁자 및/또는 분양대행사와 수분양자간의 임대계약, 수익보장, 계약해제합의, 환매계약, 할인분양, 대물변제 등)에 대해서 수탁자인 신한자산신탁(주)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매수인(수분양자)은 수탁자를 상대로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없고 모든 하자보수의 책임(사용승인 전 하자 포함)은 시공사에게 있으며, 수분양자는 수탁자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시공사 교체사유 발생 등으로 인한 시공사(건축물 브랜드·명칭 변경 포함) 교체시 매수인(수분양자)은 사전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분양대금이 3개월 이상 연체되는 경우 신한자산신탁(주)는 1개월 이내에 2회의 해약최고 및 1회의 해약통지를 통해서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본 공급계약 대상 재산에 대한 일체의 하자보수책임(사용승인 전 하자 포함)은 시공사인 효성중공업(주)가 부담하며, 매수인은 신한자산신탁(주)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본 계약과 관련된 분양대금은 반드시 본 공고에 규정된 수탁자 신한자산신탁(주)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그 외의 방법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분양(매매)대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매도인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매수인(수분양자)은 분양계약 목적물의 대지가 (주)청주테크노폴리스에서 공급한 대지로서 수분양자의 대지지분 소유권이전(주)청주테크노폴리스의 용지조성사업 준공 등에 따라 지연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에 대하여 수탁자인 신한자산신탁(주)에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민·형사상의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의합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 분	시행위탁자	시행수탁자	시공사
상 호	(주)피앤엘	신한자산신탁(주)	효성중공업(주)
주 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 6, 512호(방이동, 현대토픽스)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대치동, 케이티앤지타워)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67, 27층 外(회현동1가, AK타워)
법인등록번호	110111-7654844	110111-3543801	110111-6770154

■ 해링턴 플레이스 테크노폴리스 홈페이지 : www.harrington-technopolis.com

- ※ 본 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본 공고는 편집 및 인쇄과정상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로 문의하여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043-277-2602, 02-707-4582)
- ※ 본 공고는 공급(분양)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며 청약자는 필히 본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공급(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본 공고와 공급(분양)계약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분양)계약서가 우선합니다.
- ※ 기재사항의 오류 및 이 공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